

비전임교원 인사규정

2002.12.01. 제정
2010.08.30. 개정
2018.01.01. 개정
2019.01.01. 개정
2019.07.15. 개정
2020.03.01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) 비전임 교원의 자격, 임용절차, 재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비전임 교원의 명칭과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대우교수: 강의와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
2. 겸임교수: 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, 그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하여 본교 전임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교육, 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
3. 강사: 교육과정의 운영상 시간으로 강의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

제3조(자격) ①대우교수 :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2. 외국국적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학사학위 소지자
3. 해당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

②겸임교수: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2.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
3.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(유사경력 3년 이상)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

③강사: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강사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
①, ②, ③항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4조(삭제)

제5조(임용) ① 교원의 충원은 해당 주임교수로부터 채용요청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.

②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한 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.

③ 공개 채용은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.

1. 공개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한다.
2. 지원자는 제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3. 지원자는 면접 및 시범강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비전임교원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.
4. 서류 40%, 면접 및 시범강의 60%의 비율로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필요시 시범강의는 생략할 수 있다.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적격자로 한다.
5.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임용후보자를 임용한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 비전임 교원은 1년 단위로 한다. 강사는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의 재임용 본교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삭제)

제8조(제출서류) 비전임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임용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

1. 이력서 1부
2. 최종학력증명서 1부
3.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
4. 기타 관련 서류

제9조(의무) 비전임 교원은 본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,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비전임교원: 담당과목의 강의계획서 작성, 강의, 출석부 관리, 시험 및 성적평가, 성적 전산입력

2. 대우교수: 학생 활동 지도, 연구 활동 지도, 행사 참여

제10조(삭제)

제11조(담당시간) ①강사는 주당 6시간 이하로 강의하는 것이 원칙이다.

②겸임교수 및 대우교수는 주당 9시간 이하로 강의하는 것이 원칙이다. 다만 외국인 대우교수는 예외로 한다.

③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는 주당 9시간, 겸임교수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처우) ① 대우교수, 겸임교수: 1년 단위의 근무 계약에 따라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② 강사: 본교 내규에 따라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며 기타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제13조(재임용) ① 대우교수 및 강사의 재임용시에 해당교원은 재임용 심사 요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전임교원평가위원회의 재임용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②재임용 대상교원은 재임용 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받아야 재임용이 될 수 있다.

③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우교수 및 강사에게 임용기간 만료 60일 전에 서면으로 임용기간 만료사실을 통지한다.

④재임용 신청을 통지 받은 대우교수 및 강사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학과 재임용 심의회에 제출하며 강사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14조(면직) ①강사의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른다.

②강사의 면직사유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과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‘1. 형의 선고, 2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, 3. 학급·학과의 개폐에 의한 경우’에 따른다.

③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임용계약상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5조(비전임교원평가위원회 및 기능) ①제5조 및 13조에서 정한 업적의 평가를 위하여 비전임교원평가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총장은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5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위원 및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매년 학기 말에 다음 학기 신규임용 및 재임용 대상 비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⑤위원장은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, 평가와 관련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2/3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평가위원을 도와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 단, 간사는 본교의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직원 중에서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비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서

인적사항	소속학과				
	성명				
	생년월일				
	연락처	Email		C.P	
임용사항	최초임용일				
	현 임용기간				
	평가 대상기간				
상기 본인은 재임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
20					
신청인 : (서명)					
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총장 귀하					

[별표2]

비전임교원평가서

평가항목	배점	점수
강의계획서 기간 내 입력	10	
수업 일수 준수	10	
휴강 및 보강 준수	20	
강의평가 평점 (강의평가 평균 x 10, 소숫점 둘째 자리 반올림)	50	
수업개선 보고서 작성	10	
합 계	100	